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31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콩 DP-305423-1xMON87708xMON89788 및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xMON89034xMIR162xMON87419xNK603 등 2건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콩 DP-305423-1xMON87708xMON89788	듀폰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제2018-14호	2018. 12. 27.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xMON89034xMIR162xMON87419xNK603	몬산토코리아(유)	Monsato Company	제2018-15호	2018. 12. 27.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공고제2018-345호

규제재검토 결과에 따라 개정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교육부 장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학위수여 요건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위수여의 요건 삭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와 제15조5호 삭제)

- 1) 상위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학사학위는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는 36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이상의 학점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학위수여 요건인 35학점 이상(제9조)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삭제

- 2) 제9조 조문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한 제15조5호 삭제